

수원지방법원 2023. 6. 15 선고 2022가단543669 판결 [보증채무금]

전 문

원 고 주식회사 A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(유한)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문혜민, 이찬희

피 고 유한회사 B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도시 담당변호사 김대일, 이금규, 정다운

변 론 종 결 2023. 4. 27.

판 결 선 고 2023. 6. 15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128,274,85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. 6. 11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기초사실

가. 원고는 용인시 기흥구 C에 소재한 건물 중 D, E호 및 전시장(이하 합하여 '이 사건 부동산'이라 한다)을 주식회사 F(이하 'F'이라 한다)에 임대하였다(이하 '이 사건 임대차계약'이라 한다).

나. 원고는 2022. 2. 15. F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면서 '미납합계액 142,274,850원에 대하여 연대하여 분할 지급하되, 분할금의 지급을 1회라도 지체한 때에는 분할 변제 및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미지급 금액 전부와 이에 대하여 지체한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%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'라는 취지로 약정하였고, 피고는 F의 위 미납금 납부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(이하 '이 사건 약정'이라 한다).

다. F은 원고에게 2022. 2. 28. 및 2022. 3. 28. 합계 4,000,000원, 2022. 3. 31. 10,000,000원을 합한 14,000,000원을 지급하고, 이후 이 사건 약정에 따른 분할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, 2호증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

앞서 인정한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, 이 사건 약정에 따라 F의 미납 채무를 연대보증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약정금 합계 128,274,850원(= 142,274,850원 - 14,000,000원)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약정에 따른 기한의 이익 상실일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22. 6. 11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20%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3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,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이현정